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11-12
개정 2022-08-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6 (13487)

엔에이치엔(주)
대표이사 정우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본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대표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대표위원)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대표위원")를 선정하며,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집)

- ① 위원회는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대표위원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 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기능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소집청구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3.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6. 업무·재산 상태조사
 7.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8.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
 9.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11.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12.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평가
 13.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청취
 4.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6.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인지 시 조사 및 보고
 7.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7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 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9조 (감사록)

-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